

문서번호	공사감독1처-9689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5.10.22.
공개여부	공개

★대리	팀장	공사감독1처장	시설안전본부장	
협 조	공사감독2처장			
	공사감독3처장			

도심지공사 표준(공통) 설계대가 기준(안) 감수결과 보고

2015. 10

도심지공사 표준(공통) 설계대가 기준(안) 감수결과 보고

I 그간 추진 개요

■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

- 「설계변경 오류 최소화」 종합 추진계획
 - 시설안전본부장 방침 : 공사감독1처-911호(2015.1.28.)
- 표준품셈에 도심지공사에 적합한 대가기준이 없어 감독업무 효율성 저하
- 市 공통대가의 한계성 및 감사시 엄격한 잣대 적용으로 반복적 지적사례 발생
- 표준품셈에 없는 설계대가 D/B 구축 필요

■ 추진경위

- ' 15. 4. 1. : 공사원가 연구반(T/F)공중 선정위원회 개최
 - 3개분야 76건 : 토목 34, 상수도 16, 기계·전기 26
- ' 15. 4. 29. ~ 6. 24. : 공사원가 연구반(T/F) 중간보고회 5회 개최
 - 설계대가 기준 수립(안) 토론으로 과제 규모 조정 : 76건 → 38건
 - 불합리한 지방·품셈 기준(안) 발굴 : 47건
- ' 15. 7. 31. : 공사원가 연구과제 및 불합리한 설계기준 개선 건의(안) 감수 요청
 - 감수부서 : 외부(市 계약심사과, 상수도사업본부), 내부(감사실/안전관리처)
 - 설계대가 기준 수립(안) : 3개분야 27건
 - 불합리한 설계기준 개선 건의(안) : 16건

■ 감수개요

○ 외부기관

- 서울시(계약심사과) ☞ 의견수렴 합동회의 : 공단, 계약심사과 공동 참석(*2회)

- 9. 1(화). 14:00~15:30 : 공단 2명, 계약심사과 2명
- 10.6(화). 14:00~16:00 : 공단 2명, 계약심사과 3명
- 세부 감수내용(16건)

구 분	공 종	감 수 내 용
토 목 (10건)	다이아몬드 와이어쏘우 공사원가 산출기준 정립 등	- 품셈에 없는 대가기준 정립은 설계변경 오류화에 필요한 과제로서 공단감독 시행 현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행
기 계 (6건)	수영장 물탱크 청소비 정립	- 검토방향 및 적용기준(안) 타당
	슬리브(지수관 부착형) 설치비 표준화	- 지수관 형태가 사각형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적용
	압력계 설치비 표준화	- 설치비에 대한 범위(설비구간)를 확정·보완하여 적용
	밸브 보온대가(유리면 보온재) 정립 등 3건	- 장기적인 현장실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현 설치기준(품셈-플랜트 설비공사)으로 반영

- 상수도사업본부(누수방지과) ☞ 누수방지과-8787호(2015.10.15.)

- 세부 감수내용(11건)

구 분	공 종	감 수 내 용
상수도 (11건)	구형변실 설치시 코너벽돌 (기성품) 적용단가 정립	밸브실 설치지침을 보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침개정 시까지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현 설치기준으로 시공하기 바람. 단, 현 기준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정보고 등 방침을 득하고 발주청의 승인 후 설치하기 바람.
	구형변실 설치시 기성품 (보호콘크리트+흙관) 적정단가 산출	
	원형변실 관련 기성품 (흙관D1000+D800) 적정단가 산출	
	비굴착공법 가시설 작업구 설치 피열 및 인발 단가 적정 산출 등 8건	- 사업소별 현장에 대한 시공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품질향상, 경제성 및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검토 바람 - 시장조사를 통해 적절한 단가를 산출하여 향후 기본품셈단가표 개선사항 및 의견제출 시 주관부서(재무회계과)에 제출

○ 내부기관

- 감사실 ☞ 감사실-5127호(2015.10.21.)

- 세부 감수내용 : 적용시 반영할(2가지) 요구사항

구 분	감 수 내 용
市 기준 참고사항	-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-17619(2014..11.7.)호 “회계연도 폐쇄기간 변경(익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)에 따른 건설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 개선”을 참조하여, 유지관리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공통대가 작성시 표준품셈, 환율, 노임, 유류비, 재료비, 실적공사비 등은 매년 10월초 기준으로 작성 필요
적용시 고려사항	- 대가 기준의 적용에 있어 현장별 특성(지역, 현장 난이도, 기타 조건 등)을 고려하여 반영 필요

- 안전관리처 ☞ 안전관리처-4826호(2015.10.21.)

- 세부 감수내용 : 분야별 검토사항 필요

구 분	감 수 내 용
공통사항	- 도심지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범용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준(안)은 수립되었음. 단, 적용 시 현장의 환경(시공)조건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함으로써 합리적인 최적의 단가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
토목분야	- 과년도 시행한 공사 설계서 자료 및 품셈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므로, 추후 본 기준(안)을 적용하는 시점에서 관련 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최적의 단가(자재 등)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 내용 반영 검토 바람
기계분야	- 슬리브 표준화에 대한 다양성(사양) 확보 및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
상수도분야	- 적용 전 충분한 현장 실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발주기관 (상수도사업본부)과 상호 협의하여 반영 필요

Ⅲ

향후 계획

- 도심지공사 설계대가 확정 : 총 21건(토목 10, 기계 3개, 상수도 8)

구 분	2016년부터 적용 시행			원안 적용 곤란 (현 설치기준으로 반영)
	계	원안 적용	일부 보완(현장실사 등)	
계(총 27건)	21	11	10	6
토 목 (10건)	10	10	-	-
기 계 (6건)	3	1	2	3
상수도 (11건)	8	-	8	3

- 분야별 보완 조치내용(기계 2건, 상수도 8건) : 11.30限
 - 기계분야 : ✓ 슬리브(지수관 부착형) 사각형 포함하여 적용
 - ✓ 압력계 설치비에 대한 범위(설치구간)을 확정하여 적용
 - 상수도분야 : ✓ 현장실사하여 신뢰성 확보 후 대가기준 확정
- 향후계획 : 설계대가 확정 12월限
 - 서울시 발주청 반영요청 및 공단 설계(변경) 시 적용

Ⅳ

행정 사항

- 보완(현장실사 등) 조치(11.30.限) 요청 : 공사감독2•3처

붙 임 : 도심지공사 표준(공통) 설계대가 기준(21건). 끝.